

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문화일보 등(12.17.) >

- ◆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가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
 - '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3년, '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원 후 재범
 - '12년부터 성범죄로 실형 선고받으면 20년 자격제한, 이전에는 범죄는 2년만 자격제한
 -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되고 벌금형에는 자격제한 규정 없어

□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**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**는 '12년 8월부터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(2→20년)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.

* ('12.8월 이전) 강간상해·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제한 ('12.8월부터 현재) 특정강력범죄 외 강간·강제추행 등 일반성범죄 시까지도 형집행 후 20년간 자격제한('12.8월 이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적용)

□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.

○ 아울러,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·추진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노지훈 (044-201-4756)
		담당자	주무관	최상욱 (044-201-4755)